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창업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401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① **(첫걸음기술개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 <별첨 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 ② **(도약기술개발)**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 <별첨 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 <별첨 3>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고도화 지원

* <별첨 4>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

* <별첨 5>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시행계획' 참조

③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

* 별도 공고문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창업팀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호)' 참조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예산 (억원)
첫걸음 기술개발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00
도약 기술개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478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120
연구마을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1년, 1억원 1차년도 : 정부 75% 이내 2차년도 : 정부 60% 이내	120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신규과제 : 정부 75% 이내 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73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우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 창업팀	3년, 5억원 정부 90%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투자금 별도지원)	210

※ 지원조건의 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자율편성형 R&D는 첫걸음기술개발과 도약기술개발에 포함 : <별첨 2> 참조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율편성형·연구마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을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기술개발	신청기업	2, 4, 6, 8월 (1~10일)	온라인 신청
도약 기술개발	신청기업	2, 4, 6, 8월 (1~10일)	* 단, 건강진단 신청기업은 오프라인 신청
산연전용	신청기업	별도안내	신청 연구기관 자체 안내
	연구기관	2.10~21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연구마을	신청기업	별도안내	신청 대학 자체 안내
	대학	4.1~14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청기업	4.1~14	온라인 신청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창업팀	매월	한국엔젤투자협회 문의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을 참조

4.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5.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
- '05년 이후 개별 기업 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했거나 '선택집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저변확대 졸업)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13년 이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실적은 '저변확대' 수행실적에서 제외
 -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 <별첨6>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1~5) 및 관리지침 참조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6. 문의처

○ 관리 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 화		주 소
	첫걸음, 도약	기업부설 연구소	
서울	02-2110-6361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 (울산사무소)	051-601-5147 (052-283-0335)	051-601-5145 (052-283-0335)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	053-659-2505	053-659-2502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	062-360-9159	062-360-9158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	031-201-6972	031-820-90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	032-450-1155	032-450-1164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천안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4)	042-865-6146 (041-564-2284)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	033-260-1632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	043-230-5348	043-230-533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53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72	055-268-256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064-710-2637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3번)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iba.go.kr>

<별첨 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별첨 2> 2014년도 첫걸음, 도약 (자율편성형) 시행계획

<별첨 3>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별첨 4>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

<별첨 5>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시행계획

<별첨 6>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628억원 내외(첫걸음 300억원, 도약 32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R&D)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도약R&D)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 기술개발	동일지역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자체 매칭
	타지역		
도약기술개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 신청절차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 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단, 건강진단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접수

※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가. 1단계 : 과제신청



□ 현장점검

- 관리기관은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기업현황을 확인

□ 기술평가

- 관리기관은 기업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전문가와 동행하여 사업추진의지, 개발타당성, 사업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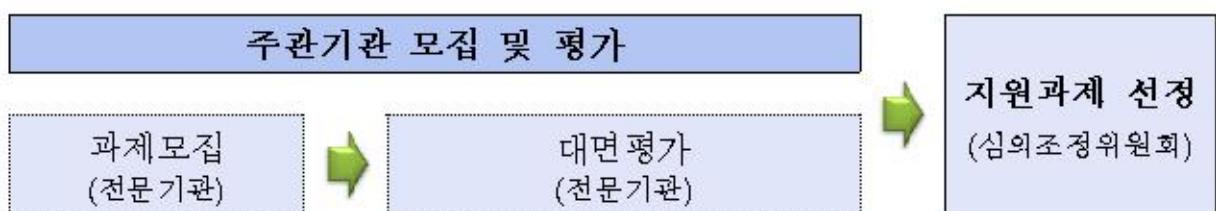
□ 대면평가 추천

- 관리기관은 기술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모집 차수별 예상 선정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 건강진단 신청기업은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을 결정하여 기술평가 60점 이상 기업에 한해 대면평가 추천

- 건강진단 : 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과제모집

○ 주관기관 공모(모집)

- 전문기관은 추천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사업유형, 사전매칭 현황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록

※ 유의사항

- ①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 동시 작성
- ② 다수 주관기관이 매칭된 경우, 참여기업에 주관기관 선택권을 부여
- ③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비매칭된 과제는 다음 회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1회에 한해 재공고(총 2회)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 송부

-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송부
 - 중복검토 결과, 참여제한 검토결과, 의무불이행 검토결과, 과제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적정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송부

□ 지원과제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단, 재신청시기가 8월 신청분 평가 시기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2014년도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기술개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 **지원규모** : 250억원 내외(첫걸음 100억원, 도약 150억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
 - **(참여기업)**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R&D)**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R&D)**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코디네이터를 보유하여 과제를 관리 중인 대학
* 연구마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컨소시엄 참여기관)**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 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기술개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4. 신청기간 및 방법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2월 21일(금)
 - 신청방법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이 관할 소재지의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점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지역 3개 이내의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기관을 반드시 대학으로 지정하여 신청
 - *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구성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 ②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기관현황표 및 운영계획서
 - ③ 컨소시엄 협약서 등 (컨소시엄 구성 시)

□ 신청기업

- 신청기간 : 총 2회(4월, 6월),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 * 대상기업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가.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파악

□ 대면평가

-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 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추천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50%) 및 대면평가 결과(50%)를 합산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추천
 - 산학협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추천 주관기관의 수 차등 적용

□ 주관기관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과제의 수를 배정(기관별 첫걸음, 도약 T/O 분리)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R&D 과제 수요조사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은 배정된 T/O의 1.5배수 이상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 자가진단 :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
 - * 신청기업 : 세금 체납, 파산,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술료·환수금 미납 등
 - *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

□ 자체평가 및 추천

- 주관기관은 모집된 R&D 과제의 적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O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 과제 추천은 배정 T/O의 50%씩 2회로 분할(4월, 6월)하여 실시
 - 추천대상 과제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시스템 입력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 * 곰예풀 등 지역별 특화업종의 소공인 R&D 과제는 대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자동 선정
 - 회차별, 기관별 T/O의 50%를 자체평가결과와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선정

구분	1회차		2회차	
과제 수	T/O의 50%		T/O의 50%	
	25%	25%	25%	25%
평가	자체평가 50% 과제평가 50%	과제평가 100%	자체평가 50% 과제평가 50%	과제 평가 100%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산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와 중소 기업 R&D를 연계한 토탈 솔루션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지원규모 : 120억원 내외

- 연구기관당 20억 내외의 사업운영(중소기업 기술개발 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등)
- (참여기업)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R&D(정부지원)		非 R&D (자체프로그램 등)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기타	
공동 R&D	기술이전, 판로개척	연구인력 교류,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제공, 국제협력 지원, 교육, 세미나 등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 산연협력센터 등)를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시험연구원 등

< 주관기관 범위 >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컨소시엄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2개 이내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 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 이상은 현금)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지원 비중	비고
주관기관	최대 1년, 20억 원 이내		주관기관 T/O 차등배분
R&D과제	최대 1년, 1.5억 원 이내	75% 이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주관기관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2월 21일(금)
- 신청 방법 :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 ② 주관기관 기관현황표 및 운영계획서
 - ③ 컨소시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등

□ 신청기업

- 신청기간 :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 * 대상기업 :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가.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 현장평가

- 전문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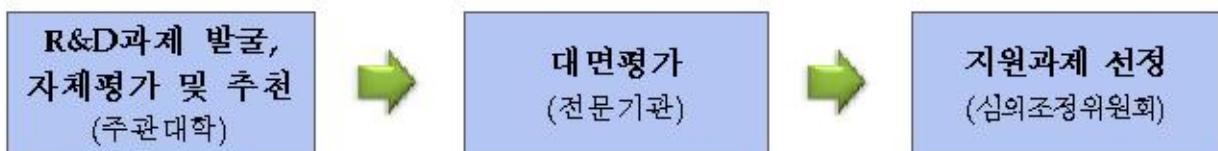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 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R&D 과제 수요조사

- 주관기관은 배정된 T/O의 1.5배수 이상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 자가진단 :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
 - * 신청기업 : 세금 체납, 파산,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술료·환수금 미납 등
 - *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

□ 자체평가 및 추천

- 주관기관은 모집된 R&D과제의 적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O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대상 과제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시스템 입력

□ 대 면 평 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 120억원 내외 (신규 2개 내외)

- 연구마을 당 20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참여기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연구
마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 연구장비를 포함한 R&D 소요자금 및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입주기업 지원기간 : 최대 2년 (1+1 단년 협약)

1년차		2년차 (선택)	
R&D	· 과제개발 지원	R&D	· 1년차 연계 추가과제 개발
		사업화	· 금형개발 지원 · 생산 공정 기술개발 ·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 등

2. 신청자격

- (참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공통사항) 대학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을 20면 이상 확보 (기업별 전용 면적 26㎡ 이상) 후 연구·편의시설 등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보유
 -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연구마을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특화기술 수요조사에 응한 기업
 - * 현재 대학 자체 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닐 것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구 분	정부지원 비중		지원대상	비 고
	구분	국비		
연구마을	2년 +∞		대학	-
입주기업	1년차	75%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치/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2년차	60%		

-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간선여부 평가
- * 입주기업은 1년차 과제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시 2년차 사업계획서 (R&D 또는 사업화)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중단 결정

□ 입주기업 부담

- 지원 과제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2년차 40% 이상 부담)
 - *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 이상, 2년차 4% 이상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기업이 부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마을 신청대학

- 신청기간 : 2014년 4월 1일(화)~4월 14일(월)
- 신청 방법 :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점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 ② 입주기업 수요조사서(입주예정 기업수의 2배수 이상 발굴)
 - ③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 신청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마을 선정 통보 시 별도 안내
 - 연구마을 선정대학 사전 수요조사에 포함된 기업에 한함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가. 1단계 : 연구마을 선정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현장평가

-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을 3배수 내외 추천
 - *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대면평가 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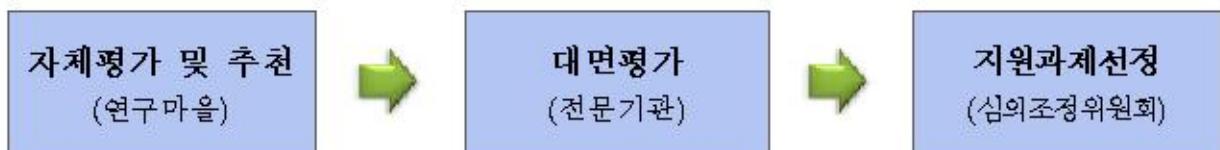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현장평가를 통해 추천된 대학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대학에 개별 통보

□ 연구마을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마을을 최종 선정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자체평가

- 입주기업 수요조사서 상의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적합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선정예상 과제수의 1.5배수 이내를 전문기관에 추천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73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2년차 40% 이상 부담)
 - *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 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도비			
2년 2억원	1년차	50%	25%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2년차	40%	20%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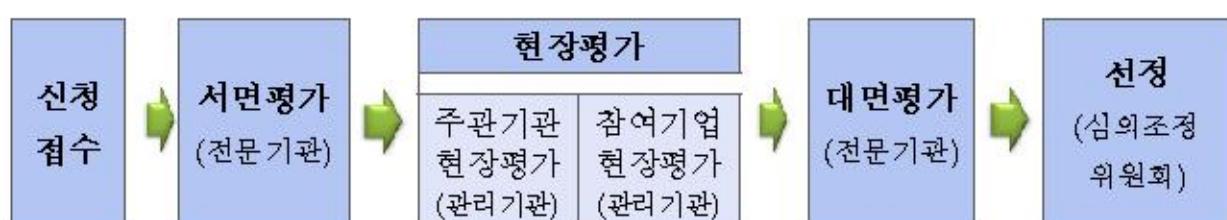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 4. 1(화) ~ 4. 14(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5.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전문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근거로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서면 평가
 - * 중소기업범위 여부 확인, 참여제한 여부, 졸업제 해당여부 확인,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이력,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여부 및 자격요건 확인

□ 현장평가

- 주관기관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사업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실시
 -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중심으로 평가하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연구인력 현황 등 각각도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적합 여부 결정
 - 현장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의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평가 가능
- 참여기업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기관에 선정 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의지, 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의 필요성, 기술개발 경험 등을 평가
 - *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관기기관이 추천한 과제의 산학연 역할분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파급효과, 개발과제의 시장성, 인력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화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 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 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화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 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 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화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0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1		

2012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p> <p>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p> <p>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p>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p>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p> <p>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p>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2013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p> <p>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p>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